

본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관리내규 세부시행세칙

제정 2016. 4. 1

개정 2018. 12. 24

경상북도 승인 2019. 2. 25

제1조(근거) 본 세칙은 경북도청(체육회) 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 제3장(연봉 및 경비지급) 제4장 (예산 및 경리관계)에 의거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팀을 운영하고 우리 도 산하 실업팀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조(목적) 본회가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육성·운영하는 실업팀 소속의 우수 선수단 구성을 위해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의 선발 및 지원금(영입금) 지급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3조(선수단 구성) 실업팀 선수단 구성은 회원종목단체 또는 본회 사무처가 사전검토와 분석한(안)을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'00.00.00>

제4조(소위원회) ①실업팀 구성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시간적, 기술적, 현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, 소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으나 추후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소위원회 구성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5~7명을 선임한다.

제5조(등급기준) ①본회 운영 실업팀 선수단의 지원금 또는 영입금 지급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격과 품행이 타에 모범이 되는 자

②연봉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'00.00.00>

등 급	등 급 분 류 기 준	지 도 자	선 수
A급	• 국가대표(현) • 전국체전 1위 이상의 실적 / 올림픽 입상자(2년 미만 경과자)	8,000만원 이하	10,000만원 이하
B급	• 국가대표(전, 현) • 전국체전 2위 이상의 실적 • 아시안게임 입상자(2년 미만 경과자)	6,000만원 이하	7,000만원 이하
C급	• 국가대표 상비군 • 전국체전 입상 실적 이상 • 전국 규모대회 입상 실적	4,000만원 이하	6,000만원 이하
D급	• 전국체전 득점 획득자 • 전국 규모대회 입상 실적 자 • 경기력향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	3,000만원 이하	4,000만원 이하

1. <삭제 '00.00.00>

2. <삭제 '00.00.00>

③우수선수 영입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'00.00.00>

등급	등급 분류 기준	지급액
A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대표(현) 전국체전 1위 이상의 실적 올림픽 입상자 (2년 미만 경과자) 	10,000만원 이하
B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대표(전, 현) 전국체전 2위 이상의 실적 아시안게임 입상자(2년 미만 경과자) 	7,000만원 이하
C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대표 상비군 전국체전 입상 실적 이상 전국 규모대회 입상 실적 	5,000만원 이하
D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체전 득점 획득자 전국 규모대회 입상 실적 자 경기력향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	2,000만원 이하

④실적 성과금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등급분류 기준	지급액
본회직영 실업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호계약에 따름 	5,000만원 이하
전국체전 본도출전 선수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호계약에 따름 	3,000만원 이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약조건 충족(공도) 	25중 : 3,500만원 24중 : 3,200만원 23중 : 2,900만원 22중 : 2,600만원 21중 : 2,300만원 20중 : 2,000만원 19중 : 1,700만원 18중 : 1,400만원 17중 : 1,100만원

1. 본회 직영실업팀(도청, 체육회팀)과 시·군 및 기타실업팀에 대한 실적 성과금은 본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상호협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 <신설 '00.00.00>

⑤전국체전에 본도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'00.00.00>

제6조(지원절차) 해당소속 단체장의 지원요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와 지원기준에 의거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.

제7조(지원대상) 본 도 대표로 실업팀 및 대학소속이거나 예정인 선수로 그 기량이 우수한자로 하고 실적성과금 지원 대상자는 본 회와 사전 계약에 따라 체전성과를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'00.00.00>

부 칙(2018.12.2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